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524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나상희 의원
찬 성 자 : 서병완, 임정옥, 정순희, 윤인숙, 이수옥, 심광식, 유영주 의원 (7명)

1. 제안이유

국내 당뇨병 인구가 최다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발병 연령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청년 및 유소년층에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은 질환 자체로 인한 건강 문제와 더불어 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유리로 이어지고 있어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로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사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습권보장 및 교육 차별 금

지

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차별 금지

3.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4.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6.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